

##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 30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 반영 허용

-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 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 감소(47.8%)
-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이다.
-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 현재는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업용지 배분

-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획선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인구 추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활권 설정 등에 실제 소비·통신·교통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 '22.4 ~ '26.12 / 192억원

□ 개정안 전문은 11월 30일(목)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팩스 044-201-5569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담당자	사무관	성상명 (044-201-3718)
		담당자	주무관	강종수 (044-201-4720)

□ **도시·군계획의 정의**

- 도시·군계획이란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함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

□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비교**

구분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개념도		
계획목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
지위와 성격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비물적 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물적 계획
수립·입안권자	시장·군수	시장·군수 (주민제안 가능)
승인·결정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
계획기간	20년 (5년 단위 재정비)	10년 (5년 단위 재정비)
계획의 범위	시·군 관할 구역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계획내용	①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②공간구조·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③토지의 이용·개발, ④토지의 용도별 수요·공급, ⑤환경의 보전·관리, ⑥기반시설, ⑦공원·녹지, ⑧경관, ⑨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⑩방재·방법 등 안전	①용도지역·용도지구, ②개발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③기반시설,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⑤지구 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